

선거관리규정 제정(안) 지상공청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임원 및 지부장 등의 선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규정」 제정(안)에 대한 여러 회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상공청회를 실시하오니 규정 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회원은 '99년 5월 31일까지 협회 기획관리팀으로 통신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 02)875 - 4471, Fax 02)888-4474, 보낼곳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411 - 24 동남빌딩 6층]

1. 제정목적

협회 임원 및 지부장 등의 선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제정절차

- 협회 제정(안) 초안 작성 : '99. 4. 11
- 규정실무위원회 검토 : '99. 4. 12

- 지상공청회 실시 : 협회지 '99. 5월호 게재
- 회원 의견수렴 기간 : '99. 5. 1 ~ '99. 5. 31까지
- 규정 심사위원회(운영위원회) 개최 : '99. 6 월중
- 이사회 개최 : '99. 6월중

3. 시행일 : 이사회 결의후 확정/시행

선거관리규정 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4조 · 제21조 ·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임원 · 대의원 및 지부장 · 지부운영위원 · 지부감사
의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장 · 부회장 · 이사 ·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
다) 및 대의원과 지부장 · 부지부장 · 지부운영위원 · 지부감사
(이하 "지부운영위원회"이라 한다)의 선거에 관하여 정관 또는
제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인"이라 함은 임원 · 대의원 및 지부운영위원회의 선
거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 회원을 말한다.
2. "선거권자"라 함은 총회의 경우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을 말하며, 지부총회의 경우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직무회원과 일반회원으로서 정관 제11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자격정지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3. "피선거권자"라 함은 2년이상 계속하여 정상적인 회원의 자
격을 가지고 있는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다만,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전기학회 · 일반전기사업자 및
전기철도분야에 소속된 회원은 예외로 한다.

가. 회장 : 만 40세이상

나. 이사 · 감사 · 지부장 : 만 35세이상

다. 대의원 · 지부감사 · 지부운영위원 : 만 25세이상

제4조(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선
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기준은 당해선거 천년도말일을 기준
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임원 · 대의원 및 지부운영위원회의 선

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회와 각 지부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 선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선관위의 직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투표·개표)등의 사무를 관掌한다.

② 선관위의 위원은 본 규정과 관계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특정후보를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선관위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결로 해당 사무기구에 해임이나 정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위촉) ① 위원의 위촉은 제2항에 의하여 추천된 자동 협회의 경우 이사회와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지부의 경우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부장이 선거일 30일전까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추천은 회장(해당 지부장)이 2명, 직무회원 종류별 (선임, 대행, 설계, 감리, 공사) 협의회(해당 회회)가 1명씩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편성기관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일로부터 차기 선관위의 구성 전일까지로 한다.

④ 위원은 명예직 무보수로 직무를 수행하며, 거마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해임) 선관위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회원의 탈퇴 및 권리정지나 제명된 때

2.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때

3. 입원 및 지부운영위원회등에 입후보한 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5.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편성기관이 없을 때

제9조(위원장과 간사등) ①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은 선거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선관위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총회는 담당부서장이, 지부총회는 해당지부의 사무국장이 된다.

④ 선관위는 선거 사무 종사원이 필요할 경우 협회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선관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은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선거공고) ① 선관위는 선거일 1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의 종류 및 선거일시

2. 후보등록 자격

3. 후보자 등록기간 및 장소

4. 후보등록 구비서류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선거공고 방법은 당해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장 선거인명부 작성

제12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회장 또는 지부장은 선거 당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로 회원등록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선거인명부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선거인의 회원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2개이상 지부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 회장 또는 지부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부를 해당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선거인명부는 회원등록대장의 전산출력으로 길을 할 수 있다.

제13조(명부작성의 감독) ① 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해당 선관위가 이를 감독한다.

② 선거인명부 작성에 종사하는 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하여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테만히 한 때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선관위가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명부열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운라 있을 때에는 구술·서면으로 협회·지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지부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하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과 선관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명부의 확정) ① 명부열람이 끝나면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해당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선관위는 후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한 선거인명부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거인명부 사본을 교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 4 장 후보등록 및 선거운동

제17조(임원·대의원 및 지부운영위원회 정수) ① 임원은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장1인, 부회장3인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 감사 2인으로 한다.

② 대의원은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선출대의원 200인 이내와 당연직대의원(임원, 지부장)으로 하고, 선출대의원은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총 재적 회원수분의 해당지부 회원수 비율로 산출하며, 그 지부별 산출된 대의원수는 일반회원·직무회원 종류별 회원수 비례로 산출한다. 다만, 단수처리는 0.7이상인 때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정관 제32조 및 지부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장과 부지부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부감사는 2인으로 한다.

1. 1급 지부: 15인이내

2. 2급 지부: 11인이내

3. 3급 지부: 9인이내

제18조(후보자 등록 등) ① 임원·대의원 및 지부운영위원회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 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3. 이력서(상별사항 포함)

4.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②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간으로 하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③ 이사·대의원 및 지부운영위원회 등록은 회원종류별(일반회원·직무회원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등록의 접수순으로 하며, 이사·대의원 및 운영위원회의 등록은 회원종류별로 접수하여야 한다.

제19조(후보자 추천) ① 각 협의회와 선거권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총회

가. 회장: 7개이상 지부에 소속된 선거권을 가진 회원 각 10인(대의원 2인 이상 포함)이상씩 100인 이상의 추천 또는 3개이상 협의회 추천.

나. 이사·감사: 3개이상 지부에 소속된 선거권을 가진 회원 각 5인(대의원 2인 이상 포함)이상씩 30인 이상의 추천 또는 각 협의회의 추천.

다. 대의원: 지부에 소속된 선거권을 가진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 또는 각 협의회(지회)의 추천

2. 지부총회

가. 지부장: 지부에 소속된 선거권을 가진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 또는 각 협의회(지회)의 추천

나. 운영위원·지부감사: 지부에 소속된 선거권을 가진 회원 10인이상의 추천 또는 각 협의회(지회)의 추천

③ 협의회가 이사·대의원 및 지부운영위원회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관위별 회원종류별 회원수에 비례하여 산출된 수의 범위안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원과 직무회원의 개인 및 협의회(지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동일직의 후보자를 이중으로 추천할 수 없다.

제20조(피선거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정관에 의하여 2년이내 회원의 권리를 정지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정관에 의하여 2년이내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임원 및 지부장 등으로 재임중 불신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21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된 때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 확인된 때

3.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된 때

② 후보자가 동시에 실시하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관위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후보자가 처분일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관위에 서면(별지 제7호서식)으로 사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총회의 개회전까지로 한다.

제24조(인쇄물 배포)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다만, 선거 당일 총회장내에서의 배포는 금지한다.

제25조(선거운동의 제한) 본인 또는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지 못한다.

제26조(특정인 비방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경력·인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대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제27조(정견발표) ① 선관위위원장 또는 총회의장은 선거당일 모든 후보자에게 정견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견발표 시간은 5분이내로 한다.

제 5 장 투표 및 개표

제28조(선출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의원 및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선출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후보자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이사·감사 및 대의원·지부장·지부운영위원회·지부감사의 선출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후보자중 총회 및 지부총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선출방법을 결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등록된 후보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출할 경우에 미달될 경우에는 총회에서 제3조 제3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받아 선출할 수 있다.

1. 무기명 비밀투표

2. 회원종류별 비례로 9명이내의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선출이 경우 일괄하여 친반여부를 묻는다.

3. 거수·기립 등 기타의 방법.

④ 이사선출시 당연직이사(정부 주무과장) 1인을 제외한 18인은 전기학회 임원 1인·일반전기사업자 임원 1인·전기철도분야 1인과 일반회원·직무회원 종류별(선임, 대행, 설계, 감리, 공사) 회원수를 비례하여 선출하며, 지부장중에서는 2인 이내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전기학회와 일반전기사업자에 속한 이사는 그 소속장의 추천에 의한다.

⑤ 대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의 증가·결원 등을 이유로 다시 선출할 수 없다.

제29조(선거참관인) ①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개표의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참관인을 선거권자중에서 선정하여 선거일 3일전까지 선관위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신고된 참관인은 필요에 따라 선관위에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다.

③ 선거참관인은 선거를 간섭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투표통지 및 투표용지등) ① 선관위는 선거인에게 투표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의 제작은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의하며, 해당 선관위위원장의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투표통지는 총회개최에 대한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투표소의 설치) ① 기표소는 기표하기 편리하고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고, 어떠한 표식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투표함은 기표소앞 선거참관인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투표등)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②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선거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한다.

③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자격증수첩 및 전력기술인수첩등 국가나 협회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말한다.

④ 회장 선출의 경우 선관위는 투표용지 교부시 투표용지에 가인하여야 한다.

제33조(기표절차 및 방법)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지정된 용구 또는 지정한 방법으로 기표를 하여야 한다.

④ 2인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회원종류별로 1인을 기표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③ 선거인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라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제35조(투표소의 질서유지) ① 투표소에는 선거인·선거참관인·선관위 위원 및 선거사무총사원을 제외하고는 출입할 수 없다.

② 선관위는 투표소의 질서가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투표소안에서 폭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을 때 선관위 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장시켜야 한다.

제36조(개표관리) ① 개표는 선관위 위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② 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선거 사무 종사원 및 선거참관인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제37조(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이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선관위 위원과 선거 사무종사원이 함께 개표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고,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④ 개표가 끝난 때에는 유효·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짐개한 후 각각 봉투에 넣고 선관위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38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후보자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후보자에게 모두 표한 것
 4. 어느 날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지정한 용구나 지정한 방법으로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6. 선출하고자 하는 수이상을 기표한 것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빼워져 있어도 당해 선관위가 지정한 기재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란에만 2개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후보기표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날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복사된 것으로서 어느 날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 ③ 유효표·무효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의한다.

제39조(개표결과의 선포 및 통지등) ① 선관위는 개표결과를 투표인수, 투표한자의 수, 유효표수, 무효표수, 후보자별 득표 수를 집계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당선자가 확정되면 즉시 그 당선을 선포하고, 당선된 자에게 지체없이 당선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개표록을 첨부하여 해당 사무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선거의 이의 제기) ①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선서인 10인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선관위의 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제2항의 선관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가 승복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제41조(당선의 결정과 무효) ① 임원 및 지부장 등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의 당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득표순으로 한다.
 2.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당선이 결정된 자가 당선을 사퇴한 때에는 다음 득표순위의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당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정관과 이 규정을 위배하여 당선되거나 부정에 의하여 당선되었을 때

2. 당선자가 사퇴할 때

3. 법원에 의하여 선거 무효판결이 있을 때

③ 제2항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긴급 및 보궐선거) 임원 및 지부장이 충회 당일 사퇴한 때 또는 재임중 불신임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제18조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충회에서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출할 수 있다.

제43조(선거기록) ① 선관위는 회의록·선거록·투표록·개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3인이상이 기명捺印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무기구에서는 선거인명부·투표지·회의록·선거록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14조(징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 및 상벌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제명처리할 수 있다.

1. 선거운동시 특정인의 신분·경력·인격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또는 혐워사심을 유포한 자
2. 선거권자에게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위계·감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선관위의 위원이나 선거 사무 종사원에게 폭행·협박한 자
4. 투표소·개표소·투표용지·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시설물·서류 등을 훼손·암률·털취한 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 및 상벌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3년이하 범위내에서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다.

 1. 특정후보자를 친성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하였거나 아니하였다고 선거권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3.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를 간섭·방해한 자
 4.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한 자나 부표를 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결과를 비방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선출된 대의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이전의 대의원선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선거관리규정 제정(안) 지상공청회

(별지 제1호서식)

선거관리위원 추천서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지회)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
천합니다.

회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년 월 일
○ ○ ○ ○ 협의회(지회)
대표자 (직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지부) 규장

(별지 제2호서식)

선 거 인 명 부

작성일 : 년 월 일

()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3호서식)

()후보자 승낙 및 등록신청서

1 회원번호		2 회원가입일	년 월 일
3 성 명	(한자)	4 주민등록번호	-
5 회원종류	일반회원, 직무회원(선임, 대행, 설계, 감리, 공사)		
6 직 장 명		7 전화번호(자/직)	
8 주 소	(자택) (직장)		

상기 본인은 선거관리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 후보자를 충남하며 그 등을을 신청합니다.

二〇

승낙인 (인) 신청인 (의)

첨부서류 1 서약서 1부

2 이어서 1부

3 추천서 1부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서식)

() 후보 서약서

1 회원번호	2 회원가입일	년 월 일	
3 성명	(한자)	4 주민등록번호	-
5 회원종류	일반회원, 직무회원(선임, 대행, 설계, 감리, 공사)		
6 직장명	7 전화번호(자, 직)		
8 주소	(자택) (직장)		

상기 본인은 선거관리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 후보자에 등록을 합의 있어 협회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깨끗한 선거 풍토의 조성과 공정선거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二〇

위 서약인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5호서식)

()후보자 추천서

추천받는 자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회원번호	

위의 회원을 선거관리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지부별 :

회원번호	대의원 여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날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서식)

후보자 사퇴신고서

1 선거구 및 선거명	2 회원번호
3 후보자 성명	4 성명

위의 본인은 선거관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서식)

()후보자 추천서

1 선거구 및 선거명	2 회원번호
3 추천받는 자	4 성명

위의 회원을 선거관리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실시하는 () 선거에 있어서 우리협의회
(지회)의 결의에 따라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 협의회(지회)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8호서식)

선거참관인 (선정·교체)신고서

1. 선거구 및 선거명 :

2. 후보자명 :

3. 참관인명

회원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선거관리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참관인을 위와
같이 (선정·교체)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선거관리규정 제정(안) 지상공청회

(별지 제9호서식)

* 1인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용지

기호	후보자	기표
1		
2		
3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선거관리위원회(가인)

(별지 제10호서식)

*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용지

회원 및 분야별	기호	후보자	기표
일반회원 (1명기표)	1		
	2		
	3		
선임회원 (1명기표)	1		
	2		
	3		
대행회원 (1명기표)	1		
	2		
	3		
설계회원 (1명기표)	1		
	2		
	3		
감리회원 (1명기표)	1		
	2		
	3		
공사회원 (1명기표)	1		
	2		
	3		
전기철도회원 (1명기표)	1		
	2		
	3		

선거관리위원장(직인)

회관건립성금

'99. 4

순번	성명	회원번호	소속	금액(구좌수)
1853	정인석	4371	(주)대구은행	5만원(1)
			월계	50,000원
			누계(이자합산)	787,997,237원



국민은행 829-25-0011-389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빛은행 154-04-101603 "

한미은행 136-50255-248 "

농협 018-17-002190 "

♡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입금후 협회 총무과로 전화나 팩

스로 연락하여 카드확인 바랍니다

[☎ 02)875-4471]

www.kst.or.kr